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1221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A

피고B

변론 종결 2017. 12. 20.

판결 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포천시 C 전 6,701㎡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7. 5. 20. 접수 제159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 5. 20.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포천시 C 전 6,70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2. 3.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1997. 5. 20. E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7. 5. 20. 접수 제15964호로 채권최고액은 20,000,000원이고, 채무자는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D는 2017. 4. 27. 사망하였고, D의 배우자인 선정자 F, D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G, H, I, J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E은 2001. 10. 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E의 위 근저당권 중 2/17 지분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 및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므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판사채성호

별지